

해외규제 모니터링 제10호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

“본 뉴스레터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규제 리포트’와
서울과학기술대 천창민 교수님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 리포트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 -미국·유럽·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입법을 바탕으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 가상자산의 대두와 양면성

- 현재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를 모두 합하면 약 2.64조 달러, 한국 돈으로는 3,500조 원이 넘습니다.¹⁾ 이는 전 세계 자동차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약 2.87조 달러)와 유사하고 식품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약 2.44조 달러)보다 큰 규모입니다.²⁾ 2010년 5월,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사용한 첫 거래가 이뤄진 지 약 16년 만에 이뤄낸 성장입니다.
- 반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경영 감독 기준이나 이용자의 피해보상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산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됩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세계 3위권의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한 사건은 가상자산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불안정성이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일깨웠습니다.
- 가상자산의 이러한 양면적 특성을 두고 세계 주요국은 가상자산 산업계를 육성하는 동시에 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추세입니다. 각 국가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례에는 해당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규율하려고 하는지에 관한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 이번 리포트에서는 우리나라 및 미국·유럽·아시아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방향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Forbes, 2026. 9. 14. 기준

2) companiesmarketcap, 2026. 9. 14. 기준

▣ 우리나라: 이용자 보호에 이은 시장 질서 확립 추진

-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라는 두 축을 세우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습니다. 위 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보험 가입·예치금 예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이 기존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역·벌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근에는 가상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1단계 입법’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를 세우는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그 배경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위원회(신설)의 권한, ▲디지털자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인프라를 다진다는 복안입니다.

▣ 미국: ‘Crypto 3법’ 입법 추진

“규칙은 여러분의 산업(암호화폐)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³⁾

— 트럼프 美 제45·47대 대통령, '24. 11. 5.자 연설 中 —

“우리는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완전히 끝냈습니다.”⁴⁾

— 트럼프 美 제45·47대 대통령, '26. 8. 19.자 연설 中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 가상자산에 호의적인 국가수반으로 손꼽힙니다. 그는 2024년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하며 가상자산 산업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었습니다.⁵⁾ 당선 이후에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육성하고 이를 달러 패권과 결합하기 위해 GENIUS법·CLARITY법·反CBDC법, 일명 ‘Crypto 3법’의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GENIUS법은 이미 입법이 완료되었으며 CLARITY법은 상원에서 논의가 계속되는 중입니다. 이하에서는 위 3개 법안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 ‘GENIUS법’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도 및 설립법)」의 머리글자를 딴 별칭으로, 다양한 가상자산 중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제도를 우선 규정하였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금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과 가치가 연동된 코인을 뜻하며, 이 중 상환 보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코인은 GENIUS법에 의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자격을 가집니다. GENIUS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3) CNBC, 2024. 11. 6. 보도

4)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 2026. 8. 19. 보도

5) AP통신, 2024. 7. 28. 보도

규율 취지	근거 조항	주요 내용
정의	제2조 제6항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는 암호화로 보호되는 분산 원장에 기록된 가치의 디지털 표현을 의미한다. ※ ‘분산 원장’이란 디지털 데이터를 중앙화된 서버에 두지 않고 분산하여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제2조 제14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i) 결제 또는 정산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을 것 (ii) 발행자가 ① 고정된 금액의 화폐 가치로 전환, 상환 또는 재매입할 의무가 있고, ② 고정된 금액의 화폐 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거나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조성할 것
허가 요건	제4조 제1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대비 최소 1:1의 비율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준비금은 ① 미국 화폐 ② 예금보험공사에 예치된 요구불예금 ③ 미국 국채(일정 요건 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발행자의 의무	제4조 제5항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은행비밀법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된다. ※ 은행비밀법은 자금세탁을 탐지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기록 보관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우선변제권	제9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불능 절차에서, 해당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자의 채권은 해당 발행자에 대한 다른 모든 채권보다 우선한다.

• GENIUS법은 2027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며, 그 세부 사항은 미국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등이 만드는 시행규칙을 통해 확정됩니다. 최근 발표된 재무부의 시행규칙 제정 예고안은 해외 기업이 미국 거주자에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GENIUS법의 역외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CLARITY법, 즉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화 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은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하는 법안으로서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배타적인 규제 관할권을 가지지만, 초기 자금 조달과 투자 계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감독합니다. ▲디지털 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증권법보다 간소화된 자금 조달 방안과 고유의 공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통제 주체가 없는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신 중개업체가 자금세탁과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 CLARITY법은 지난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2026년 9월 15일 상원에서 열린 표결(법안에 대한 토론 종료 동의안)에서 부결되어 법안의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反CBDC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은 CBDC를 설립·발행·홍보하기 위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이하 ‘Fed’)의 어떠한 조치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 이유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강력한 경쟁자인 중앙은행을 시장에서 배제할 필요성, ▲중앙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통하여 개인 이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려는 목적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 이와 같은 反CBDC법안의 주요 내용은 하원 심사 과정에서 CLARITY법안에도 포함되었으나, 2026년 9월 공개된 상원의 최종 수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별도 법안(S. 1124)으로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Fed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 산업이 미국의 혁신과 국제적 리더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선언하면서, 미국 달러 주권의 증진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으로는 독립성을 인정받는 연방준비제도를 완벽히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법」을 통한 포괄적 규율

- 유럽연합은 지난 2023년 모든 회원국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통일된 암호자산 규율법을 채택했습니다.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통칭 ‘MiCA’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EU 내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에 직면할 우려를 해소했으며, 이용자들은 보다 강화된 보호제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 MiCA는 ‘암호자산’을 ‘분산 원장 기술이나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가치나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하면서 그 특징에 따라 ▲전자화폐토큰 ▲자산연동토큰 ▲일반 암호자산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암호화폐가 하나의 공식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경우 ‘전자화폐토큰’에, 둘 이상의 통화 또는 다른 가치권리와 연동되는 경우 ‘자산연동토큰’에 해당하며 위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암호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발행인이 이행해야 하는 요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럽연합에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들은 MiCA의 다음 조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규율 취지	근거 조항	주요 내용
허가 요건	제59조 제1항 제59조 제3항	• 법인일 것 • 법인 아닌 기업의 경우, 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삼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건전성 감독을 받을 것
	제59조 제2항	• 유럽연합 내에 주사무소를 보유할 것 • 유럽연합 내에 실질적 관리 장소를 보유할 것 • 이사 중 적어도 1명은 유럽연합 거주자일 것
지속 요건	제59조 제4항	허가를 받은 뒤에도 허가 조건을 항상 충족하여야 함

허가의 취소	제64조	• 허가를 받은 날짜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9개월 연속으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암호자산 보유자의 보호나 시장 건전성과 관련된 조항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	------	---

□ 영국: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개정 및 세부 규범 제정

- 미국과 유럽연합이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구상하였다면, 영국은 기존 법률을 보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난 2000년 금융업계를 총괄하기 위해 제정된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통칭 'FSMA 2000'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을 금융 서비스 규제 체계에 편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습니다.
 - 'FSMA 2023'을 통해 개정된 FSMA 2000은 ▲암호화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금융상품과 같이 별도의 규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제417조에서는 '암호자산'을 '전자적으로 양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고 데이터 기록이나 저장을 지원하는 기술(분산 원장 기술을 포함)을 사용하는, 가치 또는 계약상 권리에 대한 암호화된 보안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제71K조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일정한 활동을 '지정활동'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은 영국 재무부의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00(암호자산) 규정 2026」 및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의 「FCA 가상자산 최종 규칙서 2026」 등에 의해 규율됩니다.
 -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00(암호자산) 규정 2026」은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FCA의 인가감독체계에 편입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공모와 거래소 상장에 대해 정보공개 의무, 공시서류 발행 의무를 두었고, ▲시장 남용,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 25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 FCA는 「FCA 가상자산 최종 규칙서 2026」에서 5개 정책성명서(PS26/9~13)를 통해 암호자산 관련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세부 규율을 설정하였습니다.
 -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실사 및 적격 암호자산 공시 문서(Qualifying Cryptoasset Disclosure Document)의 작성공개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시장 남용과 내부자 거래를 막기 위한 온체인 모니터링 및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 ※ '온체인 모니터링'은 블록체인의 거래 및 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분석 도구입니다.
- 기업들은 소비자 의무, 영업 행위 규정, 분쟁 해결 및 금융 옴부즈맨 서비스 이용, 고위 경영진 체계·시스템 및 통제, 고위 경영진 및 인증 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고객 자산 규정 및 규제 보고 관련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를 노리는 홍콩과 두바이

- 아시아의 전통적인 금융중심지 홍콩과 신흥 강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두바이는 유연성과 실용성을 앞세운 접근법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 홍콩은 ‘동일 사업, 동일 위험, 동일 규칙’ 원칙을 내세워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을 꾀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이 다른 금융 분야와 사업 영역·리스크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면 적용받는 규제 또한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홍콩은 구 금융 영역에서 설계되었던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가상자산 영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글로벌 규제에 발맞추는 중입니다. 이러한 안전장치 하에서 홍콩 증권거래소는 지난 2024년 아시아 최초로 가상자산 ETF를 상장하였습니다.
 -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는 ‘ASPIRe’ 로드맵을 발표하여 미래 가상자산 규제 체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ASPIRe는 시장 접근성(Access), 투자자 보호(Safeguards), 상품 다변화(Products), 인프라 고도화(Infrastructure), 관계망 구축(Relationships)이라는 5가지 요소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인허가 제도를 명확하고 간소하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탐지·보고 체계를 구축하며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 두바이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규제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독립된 가상자산 전담 규제기관인 가상자산규제청(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였습니다. 재정적·행정적 자율성을 가지는 전담 기구를 통해 아랍에미리트를 가상자산의 국제적 허브로 육성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이 자국에 사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장려한다는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규제청은 ▲가상자산 정책 및 계획 수립, ▲가상자산 발행 관련 규제감독·관리, ▲거래 기준의 설정, ▲기타 교육 및 민간 협력 등 전방위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2026년 3월에는 ‘거래소 서비스 규정집 2.1’을 통해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 맺음말

- 세계 각국은 각자의 필요성과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제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의 최신 정책·법제 등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자_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박제연, 변호사 현우진